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과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지역 음식축제, 식품박람회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생관련 단체 등 용어의 정의 추가 및 삭제(안 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내용 명확히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행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제3호)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7조
- 2) 「관광기본법」 제6조
- 3) 「외식산업 진흥법」 제3조
- 4) 「식품위생법」 제36조, 제47조의2,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4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위생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영업자 단체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업소 지원”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위생업소로”를 “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위생업소
2. 위생관련 단체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및 교육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사업
4. 위생업소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지역 음식축제, 요리경연대회, 이·미용 서비스 경연대회, 식품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7.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 사업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 음식축제, 식품박람회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

제15조 중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 <u>좋은식단 실천업소</u> ”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3. “ <u>모범음식점</u> ”이란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우수업소를 말한다. 4. “ <u>구미맛집</u> ”이란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우수하며, 최근 2년 이내 식중독 발생 민원불편신고 및 행정처분이 없는 음식점으로서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맛과 서비스, 위생 등을 평가 심의하여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5. “ <u>음식문화 개선</u> ”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위생관련 단체</u>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외식업소들이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영업자 단체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공중위생업소”란 위생 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 관리 상태 등이 우수이상의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위생업소 지원 대상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2. 모범음식점과 구미맛집으로 선정된 우수업소
3.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4. 그 밖에 시의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참여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

<삭 제>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

----- 자로 -----

1. 위생업소

2. 위생관련 단체

<삭 제>

<삭 제>

제4조(지원사업) -----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생략)

3.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선진문화 체험, 연구 개발 및 교육사업

<신설>

4. (생략)

<신설>

<신설>

5.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

6. (생략)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 환경개선 사업

2. (현행과 같음)

3. -----

-- 사업

4. 위생업소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지역 음식축제, 요리경연대회, 이·미용 서비스 경연대회, 식품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7.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 사업

<삭제>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
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
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 주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시
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
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위생 관련 사무의 효율성을 도
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속
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생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 특정 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④ -----

----- 팀장-----.

제13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

-- 「구미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 음식축제, 식품박람회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행

3.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u>사</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준용) ----- ----- ----- -----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외식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
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
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
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
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
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
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삭제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쬔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용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용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뚜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31., 2016. 2. 3., 2019. 12. 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 12. 22.>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식품 및 공중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 사업과 식품박람회 등 행사 개최,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상됨
-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행사 사무의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 시설 임차비, 용역비 등 경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시설·환경개선 사업, 종사자 교육 및 홍보사업, 행사 개최 지원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 전시관, 홍보관, 먹거리 판매, 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공연·프로그램 운영비, 전시관·무대 등 설치비, 시설 임차비, 일반관리비, 부가세를 기본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출	313	313	313	313	313	1,565
	○ 지원사업	290	290	290	290	290	1,450
□ 총 비용		603	603	603	603	603	3,01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18	18	18	18	18	90
시 비	585	585	585	585	585	2,925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603	603	603	603	603	3,015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식품위생과 위생정책팀 박지민(054-480-5494),
식품안전팀 정지혜(054-480-559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지원사업

구 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합 계	313,000	
시설·환경 개선사업	229,000	-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3,500,000원*50개소 - 우리동네음식점 주방위생 개선사업 1,350,000원*40개소
종사자 교육 및 홍보사업	1,600	- 종사자 교육 홍보물 제작 : 1,600천원
행사개최 지원사업	77,400	-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 27,400천원 - 이·미용서비스 경연대회 개최 지원 : 50,000천원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5,000	- 이·미용봉사활동 지원 : 5,000천원

○ 위탁사업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합계	290,000	
공연·프로그램 운영비	55,000	- 개막식, 무대 공연, 무대 행사 등 40,000,000원*1식 - 체험프로그램, 대학생 등 운영 부스 지원 15,000,000원*1식
시설	50,000	- 무대(LED영상) 15,000,000원*1식 - 무대 부속시설(음향, 레이어, 조명 등) 12,000,000원*1식 - 발전차 4,000,000원*2대 - 특별전시관 15,000,000원*1식
임차비 및 설비	50,000	- 부스, 테이블, 의자, 냉장고, 가스·전기설비, 차양시설 등
행사운영비	79,000	- 부스 현수막, 인쇄물 등 10,000,000원*1식 - 행사장 조성 소모품 10,000,000원*1식 - 인건비(운영, 안내 등) 173,160원*50명*2일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급식 8,000원*200명*2일*2식 - 식기 다회용기 서비스 20,000,000원*1식 - 홍보(가로등배너기 등) 15,000,000원*1식
포토존	15,000	- 키즈존, 포토존 운영, 조명 15,000,000원*1식
용역	5,000	- 청소, 안전관리 용역 등 5,000,000원*1식
기타	36,000	일반관리비, 부가세

소 관 부 서		식품위생과
입 안 자	과 장	이 명 희
	팀 장	황 은 영
	담 당 자	박 지 민 (480-5494)